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93
----------	------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김현기 의원의 10명
- 나. 제 안 일 : 2017년 3월 16일
- 다. 회 부 일 : 2017년 3월 20일
- 라. 상 정 일 :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4월 26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기 의원)

가. 제안 이유

- 서울시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부서와 민간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안 제5조)
-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안 제10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울시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아닌 규칙을(「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하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 민간전문가 :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총괄·조정하거나 기획·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함.
제3조(기본원칙)	-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함. - 민간전문가는 법령·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함.
제4조(적용범위)	-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름. -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음.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 시장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5.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6.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7.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함. -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함.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능력 있는 많은 민간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함. -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음.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제9조(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됨. -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됨. -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됨.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12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음.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운영 중인 민간전문가는 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운영되는 민간전문가로 봄.

- 본 제정안은 민간전문가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동 조례를 통하여 민간전문가에게 ‘행정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에 앞서 행정 체계에서 공직자의 역할과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 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민간전문가의 정의, 기본원칙 등(안 제1조~제4조)

-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민간전문가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에서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총괄·조정하거나 기획·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총괄·조정하거나 기획·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재 민간전문가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11개 실·국·본부, 46개 사업에 435명이 민간전문가로 시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9개 사업 17명에게는 공간을 지원하고 있음.

〈실·국·본부별 민간전문가 참여현황〉

- 총 11개 실·국·본부 46개 사업 435명 참여
 - 그 중 9개 사업 17명 공간지원 중

연번	구 분	사업수	참여인원	공간지원
1	도 시 공 간 개 선 단	3개	172명	1명
2	도 시 재 생 본 부	10개	128명	8명
3	경 제 진 흥 본 부	6개	45명	1명
4	푸 른 도 시 국	2개	40명	-
5	도 시 계 획 국	5개	24명	-
6	지 역 발 전 본 부	5개	10명	-
7	문 화 본 부	6개	6명	2명
8	물 순 환 안 전 국	4개	4명	1명
9	한 강 사 업 본 부	3개	3명	1명
10	서 울 혁 신 기 획 관	1개	2명	2명
11	관 광 체 육 국	1개	1명	1명
합 계		46개	435명	17명

- 관련 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5항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및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서울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 범위 및 권한, 책임의 소재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서울시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위원은 ‘공무수탁사인’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¹⁾」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민간전문가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 받으나, 동 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바,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및 자격기준 등(안 제4조~제7조)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요건과 위촉계획에 명시할 사항, 자격기준, 위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위촉방법으로는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인터넷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능력 있는 많은 민간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안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능력 있는 많은 민간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민간전문가의 위촉은 특혜 시비를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전문성있고 능력있는 전문가가 서울시정에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위촉계획 수립(안제5조제2항) 및 위촉(안제7조)시 공개 모집 등의 절차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전문가 위촉기간, 보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안 제8조~안 제9조, 안 제11조)

○ 안 제8조, 제9조, 제11조는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보수수준,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임의 제한 규정이 없는바, 위촉 가능한 기간의 명확화를 위하여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안 제11조는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안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재 서울시에서는 17명의 민간전문가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바, 업무공간 등의 제공을 통해서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일정 부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하겠으나,
- 첫째, 435명의 민간전문가 중 특정 민간전문가에게만 업무 공간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특혜소지는 없는지, 둘째, 직원들의 업무 공간이 부족하여 청사를 임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근하여 근무하지 않는 민간전문가를 위해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셋째, 직원들과 함께 업무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보안 등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및 해촉 등(안 제10조, 안 제12조)

- 안 제10조와 안 제12조는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시 민간전문가는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 받으나,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통제장치는 미약하다고 할 것인 바,

○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민간전문가의 권한에 따른 책임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정안에는 단지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해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간전문가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등을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전문가의 정의에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적용범위 중 “시 산하기관”을 “그 소속기관”으로 함(안 제4조)
- 민간전문가 위촉시 공고 절차를 명시함(안 제7조).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693
----------	-------------

제안연월일 : 2017년 4월 2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간전문가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등을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전문가의 정의에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적용범위 중 “시 산하기관”을 “그 소속기관”으로 함(안 제4조)
- 민간전문가 위촉시 공고 절차를 명시함(안 제7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시 산하기관"을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제11조제3항 중 "원할"을 "원활"로 한다.

안 제12조 중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u>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총괄·조정하거나 기획·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u></p> <p>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u>시산하기관</u>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p> <p>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u>위해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능력 있는 많은 민간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② <생략>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u>원활한</u>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2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u>다음 각 호의 1에</u>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u>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u>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p> <p>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u>그 소속기관</u>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p> <p>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u>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u>원활한</u>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2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u>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① 시장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5.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6.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7.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운영 중인 민간전문가는 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운영되는 민간전문가로 본다.